

보건법과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7
------------	------

발의연월일 : 2017. 8. 9.

발 의 자 : 이정현 · 이진복 · 김광림

김상훈 · 이철규 · 문진국

백승주 · 이명수 · 이종명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되었으나, 제조·가공 등을 한 식품,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보건법과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이에 「보건법과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를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